

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에 의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>

제2조(구성) 위원회에 위원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내·외부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. 단, 외부인원은 1/2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>

1. 삭제 <2013.7.1>

2. 삭제 <2013.7.1>

제3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위탁의뢰 산업체 적부에 관한 사항
2. 위탁생의 선발기준에 관한사항
3.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에 관한사항
4.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6. 학교와 산업체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
7. 산업체위탁교육생 이직 시 교육 여부 심의에 관한사항
8.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5조(회의소집) 위원회는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.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